

수수료 징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모든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2.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

총톤수	수수료
500톤 이하	20,000원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30,000원
1,000톤 초과 ~ 10,000톤 이하	50,000원
10,000톤 초과 ~ 20,000톤 이하	70,000원
20,000톤 초과	100,000원

3. 국제공인 예방접종 수수료

가. 예방접종 수수료로 백신료와 접종비용을 징수한다.

나. 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한다.

다. 접종 비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무료

2)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4. 소독 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한다.

5. 그 밖의 수수료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검역조치에 대한 수수료는 그 실비만 징수한다.